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54,405,000	37,632,150
일반회계		1,127,892,000	33,836,760
특별회계		126,513,000	3,795,390
	공기업특별회계	102,007,000	3,060,210
	상수도사업	43,595,000	1,307,850
	하수도사업	58,412,000	1,752,360
	기타특별회계	24,506,000	735,18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223,000	186,69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807,000	24,21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236,000	37,080
	주택사업	387,000	11,610
	주차장설치사업	454,000	13,62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401,000	12,030
	보령담주변지역지원사업	868,000	26,040
	의료급여기금사업	2,260,000	67,800
	공공급식지원센터	11,870,000	356,1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25,858천원 으로 한다.

제 4 조 예산의 재원 구분을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제 5 조 예산의 재원 구분을 위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

국: 국고보조금 / 균: 균특회계보조금 / 기: 기금보조금 / 특: 특별교부세 / 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 도비보조금 / 조: 특별조정교부금